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The Police's Public Safety Infra Constru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김현동,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Hyun-Dong Kim(i0sac@nate.com), Hyun-Bin Jo(johyunbin@korea.com)

요약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계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중심어 : | 성폭력 | 범죄피해자 | 피해자 지원 | 범죄예방 | 치안인프라 |

Abstract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that the police can investigate on site. However, regardless of these wid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sexual crimes against the socially weak do not seem to be dwindling, raising concer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mendments. Generally sexual crimes are hard to prove, and even if reports are filed, most cases are dropped with non-prosecution disposition. Victims are usually limited to women and children and this leads to secondary victims. As this thesis states, developed countries have a more systematic protection methods than our coun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abuse victims (enhancing safety protocols with related organizations, implementing a bill of rights for the victims, prevention-centered police education, amendments to current law) to limi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inal injuries.

■ keyword : | Sexual Violence | Crime Victim | Victim Support | Crime Prevention | Police Infrastructure |

I. 서론

2000년대 이후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3년 7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용인 살인사건’, 2012년 오원춘사건 등 여성·아동 납치 및 실종, 살해 등의 범죄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감경조항 임의적 배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친고죄 규정 폐지 등 제발방지 대책만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에게 과연 경찰이 어떠한 치안인프라를 구축해야만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범죄의 의의

“성폭력 범죄”란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1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를 “성폭력 행위자”라 하고, 그에 따른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칭한다.

2. 성폭력 범죄피해자 특성

범죄피해자들은 범죄에 직면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아드레날린 급증, 심장박동 증가 등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면증,

식용장애, 무력감, 두통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반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반면 경제적 피해로는 직접적인 재산의 손해는 물론 범죄로 인한 치료비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제반비용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범죄로 인한 심리적 피해인 PTSD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3.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들로 국한되어 있고,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보다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²이 우선시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및 민·경 지원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한층 더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에 매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완벽한 제도의 실현 및 피해자 유평피아의 건설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각각의 피해자에게 대응하기에 인적·물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적 현실 가능한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2차 피해에 대한 Hackett, Day, Mohr(2008)[1]와 Jordan(2004)[2]의 연구를 바탕으로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는 것에 보호의 목적을 두고 있다.

표 1. '13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사항

법률	개정사항
「형법」	-친고죄 규정 전면 폐지(13.6.19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 모든 남성을 강간의 객체로 인정 -형법에 유사강간죄 도입(성인 대상 유사강간죄 도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 확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류 세분화 및 종류별 입소기간 연장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이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 전반적 상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고죄 규정 폐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 포함(현행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항거불능 요건 완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포함)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을 모든 성폭력피해자로 확대(성인피해자 포함)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양성은 ' 13.6.19부터, 수사재판 참여는 ' 13.12.19부터) -법원의 증인지원시설 설치 및 증인지원관 근거 마련
-----------------------	---

4. 각국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실태

1.1 미국

1979년 주요 경찰관련 전국조직에 의해 결성된 '법집행기관의 인정에 관한 위원회(The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ccreditation)'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서비스의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위원회가 권고한 기본적인 표준화 작업 중에 하나는 협박 및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다른 기관에의 적절한 부탁을 포함하는 수사단계 및 그 후의 원조, 사망통지절차의 확립 등이다[3].

표 2. 미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주요 지원내용[3]

구분	지원내용
일반적인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집행 및 수사절차에 대한 교시 -위기개입 및 심리적인 초동조치의 제공 또는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타 기관에의 부탁 및 동반 -부상을 입은 사건에 있어서 긴급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서비스 전문가와 연락을 취할 것 -피해자의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에 대한 교시 및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범죄의 결과로서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의 안전성 확보 -지원의 필요상황여부 또는 현재 지원상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의 접촉에서 24-48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것 -긴급한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단체에 대해 신속한 부탁을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할 것
특별한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특별반: 진술청취시 임회, 형사절차의 교시, 검사와의 연락 등의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 - 아동지원센터: 피해자 및 증인이 경찰시설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두려움 등의 제거를 위해 아동학개수사반을 구성 - 살인피해자 유족에의 대응: 사망증명서의 취득, 경제적 지원 그 외 급부의 신청, 장례식장의 선정 등 중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내서를 유족에게 교부

1.2 영국

영국의 범죄피해자 정책은 경찰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특별조치를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일반 범죄피해자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즉 강간 등의 특별조치를 요하는 유형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정된 경찰관 또는 전문수사반의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일반 범죄피해자는 훈련된 민간 자원봉사자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하는 VS(Victim Suppor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VS에 위임하는 자동위임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살인, 교통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과 같은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VS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균형을 취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의 단계를 넘어서 형사절차, 수사의 진행상황, 결과 및 기소, 공판의 상황, 가석방, 판결 등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있다[4].

1.3 독일

범죄피해자대책 일반의 수립과 집행은 연방과 각 주의 범무성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독일경찰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찰활동 과정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 1998년 Hessen주의 수도인 Darmstadt 경찰본부에서 범죄피해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Pro-Opfer'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보호에 전문성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범죄통제 및 범죄예방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로고 및 표어를 제작하고 피해보상 법률에 관한 안내서를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관서 구조를 변화하려는 노력을 추진하였고,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 하였다. 그 결과 언론에서는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주민의 신뢰도 강화되었다. 또한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신

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나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직 설립에도 경찰이 적극 관하고 있는 실정이다[5].

1.4 일본

1996년 2월, 피해자 대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여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 적용토록 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전담요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책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카운슬링 체제의 정비,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부담 경감, 피해자의 안전 확보 등을 설정하고서 피해자 특성에 부응하는 피해자보호시책을 펴고 있다.

표 3. 일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주요 지원내용[5]

구분	지원 내용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자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요원 지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수사경찰관이 아닌 다른 지정된 경찰직원이 전문적인 피해자지원을 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피해자 상담활동	주로 성범죄, 폭력 등에 관한 상담이며, 심리학 등 전문지식과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성 수사경찰관 배치	전국에 428개의 파출소를 여성상담 파출소로 지정하여 여성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여성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담자의 요망에 따라 가정방문도 실시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임무로는 정액 등 증거채취, 병원 진료 등 보조, 수사상황 등 연락업무를 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민간 피해자원조단체에게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게 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범죄피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해당 단체에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III.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

1.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최근 들어 수원 오원춘 사건부터 제주 올레길 부녀자 살인사건까지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약 10.9% 증가하였다.

표 4.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발생(건)	15,970	17,242	20,375	21,912	22,935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2013년

경찰청 2013년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2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22,935건인데 반하여,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성폭력상담소 상담 건수는 77,099건이며, 피해자 지원은 66,824건에 달한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경우 추정 암수율이 경찰청 검거율 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현황

2.1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현황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강력범죄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욕구가 급증하는 추세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및 사후대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체계적이고 과학화된 목표관리 중심의 정책추진과 보다 빠르고 전문화된 현장 초동대응 능력 극대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다.

표 5.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여성청소년 진술녹화실 운영	- 성폭력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중복 수사로 입게되는 2차 피해와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므로, 아동과의 조사기술이 관련이 된다. 이에 성공적인 조사와 면담을 위해서는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언어나 기억력 등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이 반드시 참여하여 실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조사시 속기사 지원	- 피해자를 배려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
피해자 서포터제	- 강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접촉창구를 일원화하여 범죄발생시 초기단계부터 전담하여 초기상담·정보제공 및 신변보호에 이르기까지 각종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실시

1.2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200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이 선진국 처럼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및 지원기관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강력사건 발생시 대책마련에만 급급하였다. 이후 2003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10년 한국피해자지원협회까지 민·경 협동의 결실로 점차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정책 대열에 다가서고 있다.

표 6.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13. 7. 기준)

구분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통합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대상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주요 업무	수사법률 의료·상담	수사법률 의료·상담 및 심리	법률·의료·상담·심리
개소	22개 (24시간)	7개 (24시간)	10개 (9시간)

위의 기관들은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2차 피해자화를 방지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관서 형사과와 ONE-STOP 지원센터에서 이중조사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3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 법률

우리나라의 성폭력에 관한 입법정책은 특별법을 통한 구성요건의 신설·확장, 형벌의 가중과 같은 엄벌주의 정책과 신상정보 공개, 전자감시, 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범죄자에 대한 통제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6], 이와 같은 특별법 양산은 법체계, 법이념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7].

최근 들어 민·경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법 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7. 성폭력 범죄피해자 관련 주요 법률[9]

법률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지원법인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 관계 포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기금조성 및 용도 등 보호기금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일반사항	구조금 지급 대상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해자 사생활 비밀 등 누설금지 -전담조사제 및 전담 재판부 -16세미만·장애인 필요적 진술녹화 ※ 개정법률은19세미만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인 동석 -증거보전의 특례 -개정 법률 신설 ○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 변호인선임특례 ○ 증인지원시설, 진술조력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배상명령제도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친권상실신고 등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필요적 진술 녹화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인 선임특례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및 치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단, 19세에 도달하는 해 1월1일을 맞이한 자 제외 ※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 아동인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 가능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불이약처분의 금지 -상담소 및 보호시설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성폭력범죄 가해자가 가정폭력특례법 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취학 및 취업 지원 -불이약처분의 금지 -보호·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신변안전조치 -신원관리카드 -불이약처우 금지 -중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성폭력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목적으로 협박등 행위 시 가중처벌)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IV. 경찰의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1. 관련 유관기관을 통한 치안협력체제 강화

성폭력 사건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성관계를 주장할 경우 DNA와 같은 물적 증거도 별다른 직접 증거가 되기 힘들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서 기능하는데, 생식기 등 신체적 외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범죄상황과 일치할 경우 법의학적 증거확보는 성폭력 범죄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에서 이를 증명하는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인을 성폭력전담 의료인이라고 하며, 이는 범의간호사의 세부전문분야 중 하나에 해당한다[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범의간호사의 법의학적 개입에 따라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진술에 상응하는 의학적 소견을 파악할 수 있다면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의학적 지식이 전문한 경찰관에게 평가 소견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올바른 수사방향의 설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9].

이를 위해서 김미정(2005)[10]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 우선 전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주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전문적인 법의학적 교육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2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범의간호사를 양성하여 전국 성폭력피해자 전담 지정의료기관에 전문 인력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의간호사의 영역³이 단순히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아동·배우자 학대, 사고로 인한 사망, 외상, 폭력의 희생자 및 이들의 가해자와 다른 모든 범죄 행위자에 대한 법적응 분야에서의 임상적 간호수행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전국 병원에 범의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경찰 수사와 관련되어 유기적 조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산하기관인 학술위원회의 세미나 및 대규모 컨퍼런스 등을 통한 학자와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대책 등을 논의함으로써 한층 더 피해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장전을 위한 '통합피해자지원시스템'의 도입

그 동안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충분한 피해회복은 물론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이차적인 피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11].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형사절차 개요 설명, 수사의 진행에 관한 설명 등 피해자의 구제 또는 불안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을 통지하는 정보제공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피해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에서는 체계적으로 피해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2]. 호주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카드(Victim Support Card)'를 교부하는데 여기에는 담당경찰관의 성명·소속·연락처·피해일시·사건번호·피해자 권리장전요약·피해자지원부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13].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피해자지원시스템(Victim Support System)' 등을 운영하면서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도 '피해자지원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 '범죄피해자 지원카드(Victim Support Card)' 등을 통합한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14].

3.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 강화

여성·아동·장애인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의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성폭력 수사시스템(현재 성폭력 가해자 수사는 경찰서 형사과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ONE-STOP 지원센터 및 피해자 전담조사팀에서)을 개선하여, 범죄발생 시점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성폭력 전담부서가 신설하는 등 성폭력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죄 폐지로 인한 치안수요가 증가될 우려가 있기에, 경찰교육원 커리큘럼 상 성폭력전담양성반 등을 구성하여 급변한 수사환경 관련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음란물을 상영·유통하는 업체 등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현장인력 강화를 위한 인력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현행 법·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상주하는 인력의 확충과 관련 예산 지원의 문제는 통합시스템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ONE-STOP 지원센터의 예산은 여성가족부 70%, 지방자치단체 30%를 부담하고 있다. 통합시스템이 지역사회 내 중요시설로 자리잡고, 지원 범죄피해의 영역이 확대되면 예산지원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통합시스템이 피해자지원 전담기구로 지정받게 되면 별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지역사회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활동으로 인식이 확장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에서는 통합시스템 전담기구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중앙부처에서는 지역별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15].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지원에 있어 변호인 조력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피해자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변호를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법」 제 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피해자 보호’로 개정하여, 한 걸음 더 피해자에게 다가설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적 지원은 관련 기관들이 자체적인 운영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지원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이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에만 한정하고, 정작 피해자에게 최일선으로 다가서고 있는 경찰청은 예산을 할당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따른 재정적 지원 범위와 유형을 매뉴얼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금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폭넓게 인정하고 심사에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사정을 반영하는 방향도 좋은 대안 중 하나로 꼽힐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매년 여러 학자들과 관련부처에서 내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슈가 되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에서는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전시성 단기대책들인 신상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등과 같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범죄행위를 차단할 만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에 방화동인 지역의 순찰인력을 보강하여, 범죄를 실행하려는 자들에게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해서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의 범죄피해자지원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공공 및 민간단체의 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미흡한 실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까닭은 타 논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도상의 문제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훈련·인력의 부재, 법률적·재정적 지원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공공 및 민간단체에서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범죄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범죄피해자들은 그에 따른 2차, 3차 피해로 인해 사건 발생 때의 신체적 피해보다 더 큰 심리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단체는 사회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현재보다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찰력 증원은 답보상태에 있는 등 치안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L. Hackett, A. Day, and P. Mohr, "Expectancy Violation and Perceptions of Rape Victim Credibility,"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Vol.13, pp.323-334, 2008.

[2] J. Jordan, "Beyond belief?: Police, rape and women's credibility,"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 Practice*, Vol.4, No.1, pp.29-59, 2004.

[3] 송기오, 강경래, *한국사법개혁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4] 김효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활성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pp.81-103, 2005.

[5]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6] 강은영, 김한균, 이원상, "국내의 아동성폭력범죄 특성분석 및 피해자동보호체계 연구", *형사정책*

연구, 제87권, pp.5-44, 2010.

[7]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87권, pp.5-44, 2011.

[8] 육지영, *성폭력 발생시 범의간호사의 역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9] 류경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융합행정", *한국공안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pp.27-63, 2013.

[10] 김미정, *미국의 범의간호학 교육과정 및 범의간호사의 역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 김학석,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개선 및 피해자 기금 설립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

[12] 장규원, "피해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pp.5-44, 2010.

[13] 이정수, *호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연구*, 법무연수원, 2006.

[14] 김창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피해자지원협회지*, 제5권, pp.1-17, 2013.

[15] 김지선,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모형에 따른 다기관 협력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pp.5-34, 2011.

저 자 소 개

김 현 동(Hyun-Dong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관동대학교 국제통상학과(경제학사)
- 2010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11년 9월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
 <관심분야> : 범죄피해자보호, 청소년범죄, 경찰조직, 경찰인사

조 현 빈(Hyun-Bin Jo)

정회원



- 1999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범죄, 위기관리, 경찰조직, 경찰인사